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 개황

1-1 회사명				
1-1-1 회사명 변경 여부				
1-1-2 변경 전 회사명(1-1-1에서 “예”인 경우)				
1-2 회사 고유번호				
1-3 법인등록번호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5 법인 구분				
1-5-1 기술성장기업 여부				
1-5-2 금융회사 등 여부				
1-5-3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1-6 당기 사업연도	제○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OO개월
1-6-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1-6-2 결산기 변경 내용(1-6-1에서 “예인 경우)	MM월에서 MM월로 변경			
1-7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당기	전기	2기 전	3기 전
1-8 대표자명				
1-9 전화번호				
1-10 주소	우편번호			
1-11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기재상의 주의

-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1-5 지정대상 선정일(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1-5-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 내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 1-5-2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기재한다.
- 1-5-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합병·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기재한다.
- 1-6 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1-7, 2-2-1~2-2-6-1, 2-8, 2-10 동일)
 ②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 1-9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1-11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감사인이 신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

2. 신고 사항

2-1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여부						
2-1-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횟수						
2-1-2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유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일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	▼ 경고 초과/경고 이하					
2-2 재무기준	전기	2기 전	3기 전			
2-2-1 영업이익						
2-2-2 영업현금흐름						
2-2-3 이자비용						
2-2-3-1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2-2-4 비교재무제표 수정여부						
2-2-5 비교재무제표 수정사유						
2-2-6 전기말 자산총액						
2-3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횟수						
2-4 과거 3년간 대표이사 교체 횟수						
2-5 관리종목 지정 여부						
2-5-1 관리종목 지정 사유						
2-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여부						
2-6-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2-7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여부						
2-7-1 임직원 구분						
2-7-2 횡령·배임 혐의 금액						
2-7-3 관련 공시일						
2-7-4 자기자본						
2-8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	전기	2기 전	3기 전	4기 전	5기 전
2-9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						
2-9-1 감리횟수						
2-9-2 감리업무 수행기관	▼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2-9-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2-9-4 조치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2-10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2-10-1 당기감사인						
2-11 신용등급						
2-11-1 등급부여일						
2-11-2 평가기관						
2-11-3 평가대상						
2-11-4 등급						
2-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2-13 회사의 주된 산업에 대한 전문성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2-13-1 회사의 해당 산업 분류						

기재상의 주의

- 2-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2-1-1 2-1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1-2~2-1-4 동일)
- 2-1-2 조치사유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사유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연·월·일(YYYY-MM-DD)을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일자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경고 초과” 또는 “경고 이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내용을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 2-2 ①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다.
 ②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

업연도를 전기 사업연도로 간주하고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재한다.

2-2-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원 단위로 기재하되, 영업손실인 경우 음수 "-"로 기재한다.

2-2-2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을 원 단위로 기재하되,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인 경우 음수 "-"로 기재한다.

2-2-3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2-3-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2-4, 2-2-5 지정대상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정정공시 없이 오류 수정된 경우 기재한다.

2-2-6 전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 횟수를 기재한다.

2-4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대표이사의 교체(대표이사가 1인에서 2인 이상이 되거나 2인 이상에서 1인이 된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 중 1인이 교체·사임·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 횟수를 기재한다.

2-5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5-1 2-5에서 "예"인 경우에 기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기재한다.

2-6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6-1 2-6에서 "예"인 경우에 기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기재한다.

2-7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속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7-1 2-7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7-2, 2-7-3 동일)

2-7-3 해당 횡령·배임 혐의 사항과 관련된 공시의 최초 공시일을 기재한다.

2-8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2-9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9-1 2-9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9-2~2-9-4 동일)

2-9-2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관을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9-3 2-9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치(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9-4 2-9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유로 조치를 받지 않고 종결된 경우 그 종결일자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0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그 3개 사업연도 중 당기 사업연도가 해당하는 차수를 기재한다.

2-10-1 회사의 지정대상선정일의 감사인명(회계법인)을 기재한다.

2-11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른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BBB등급,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이상의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한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 배율이 1미만인 경우"에 따른 지정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2-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2-13 제17조의2 및 별표 7 IV.1.에 따른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2-13-1 2-13가 "필요"인 경우 별표 7 IV.1.에 열거된 산업 분류 중 해당하는 산업 분류를 기재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에 따른 회사의 산업이 IV.1.의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하는 산업을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